

	보 도 자 료	
---	----------------	---

보도	2026.10.27.(화) 조간	배포	2026.10.26.(월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	책임자	실 장	오정근	(02-3145-8730)
		담당자	팀 장	김철영	(02-3145-8888)
	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교육실 정책국	책임자	실 장	구현우	(02-6951-4175)
		담당자	국 장	사창우	(02-6951-4008)
	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	책임자	본부장	최종윤	(02-2262-6614)
		담당자	부 장	김희경	(02-3283-6479)
	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	책임자	본부장	신종혁	(02-3702-8580)
		담당자	팀 장	김홍주	(02-3702-8598)

간호조무사 대상 「보험사기 예방교육」 실시 - 의료현장에서 부지불식중 연루되기 쉬운 보험사기로부터 간호조무사를 보호하는데 주안점 -
--

〈 주요 내용 〉

- ◆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부지불식중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보험사기 사례 및 신고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
- ◆ 교육은 내년 1분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 교육부터 우선 실시하고 추후 오프라인 교육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
- ◆ 간호조무사가 보험사기가 의료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는 효과 기대

I. 추진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-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 3,988명(2026년 2분기 기준)이며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(13만 8,861명) 및 요양병원(2만 9,479명) 근무자가 16만 8,340명으로 전체의 75.2%를 차지하는 등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.
※ 통계 출처 : 건강보험통계-의료기관 종별 의료인력 현황
- 그간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교육과정에는 보험사기의 개념과 의료현장에서 부지불식중에 연루될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,
 - 일부 간호조무사가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등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- 이번 교육은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보험사기 연루 위험으로부터 간호조무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II. 교육 내용 및 방법

1

교육 내용

-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요 보험사기 유형 및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험사기 연루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한편,
 - 보험사기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 및 처벌 수준 등을 안내합니다.

◇ <참고> 「보험사기방지특별법」상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 및 처벌 수준

- ▶ 보험사기 행위 : 보험사고의 발생,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
- ▶ 처벌 : ①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, ②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·유인·권유 또는 광고한 자 ⇒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또한 예방교육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,
-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노출되는 보험사기 위험을 파악하여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

<간호조무사의 보험사기 연루 위험(예시)>

-
- ① **(간병인 상주 기재)** 입원 중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 간병 보험금 청구시 간호기록지를 간병인 상주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간호기록지에 '입원 중 간병인 상주'라고 작성해 달라는 입원 환자의 반복된 요청에 마지못해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간호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
 - ② **(증상 과장 기재)** 외래 진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증상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경우
 - ③ **(허위·과다 기재)** 특정 검사나 시술 및 처치를 시행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달리 시행 받았다고 의무기록에 기재하거나, 실제보다 검사·시술 및 처치 횟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경우
-

- 간호조무사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보험사기 의심 행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,
- 본인은 물론 동료들을 보험사기 연루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신고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- 교육 대상은 간호조무사이며, 우선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 교육부터 실시하고 교육 참여도 및 효과 등을 살펴 점차 오프라인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Ⅲ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
- 금번 예방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보험사기 연루 피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
 - 나아가 의료현장에서 보험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더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.